

「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자연보전권역 내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과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 등을 위하여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,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까지 확대하고,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혼재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연접개발 예외 사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수도권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| 개 정 안 | 수 정 안 | 사 유(검토의견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      |       |           |

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 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수도권정책과
- 전화 : 044-201-3656 / 팩스 : 044-201-5562
- 이메일 : [hj6102310@korea.kr](mailto:hj6102310@korea.kr)